

2016년 생활임금 시행 관련

광진구 생활임금 운영 매뉴얼

2015. 9

기 획 경 제 국
[일자리경제과]

➤ 목 차

□ 생활임금제 개요	1
□ 2016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2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및 적용대상	3
□ 생활임금 적용방법	4
□ 생활임금 운영 관련 사항	5
□ 생활임금 적용 Q&A	6
□ 붙임자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안)	9

I 생활임금제 개요

□ 생활임금 개념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교육비·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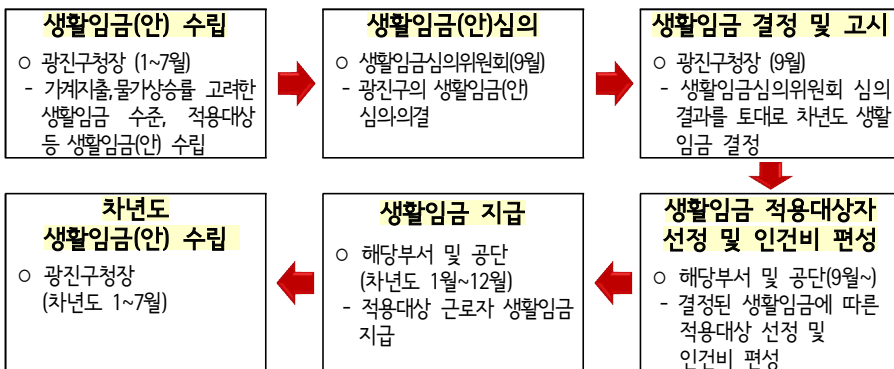
□ 생활임금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2015. 7. 10 공포)

□ 추진경과

- 정책협의회 개최(생활임금 시행방안 검토) 2014. 9.26
- 생활임금 조례 제정·공포 2015. 7.10
- 2015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 2015. 9.15
- 2016년 생활임금 시행 고시(예정) 2015. 9.30

□ 생활임금제 추진절차(매년)



II 2016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 2016 생활임금 수준

- **7,200원(시간급)/ 1,504,800원(월액)**

- 산정근거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최근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산 출 내 역

시간급 7,200원 = {(a)+(b)+(c)÷365시간} × d ⇨ (월)1,504,800원

<기준 :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3,527,556원>

(1) a :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3,527,556원에 빈곤기준선 50%를 적용	1,763,778원
(2) b : 서울시 최소주거기준(36㎡)의 실거래가 평균값 산정	650,000원
(3) c : 서울시 사교육비 서울 평균의 50%인	167,500원
(4) d : 최근 3개년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1.8%



기본가정 및 통계자료

- 서울시 평균가구원수는 약 3인(최신 인구통계 자료 '10년도 기준 2.7명)
- 3인가구 : 1인 - 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 근로)
1인 - 시간제 근로자 (월 156시간 근로), 1인(자녀)로 추정
- 월 평균 가계지출의 50%미만 생활수준을 빈곤상태로 기준
-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에 서울 특성을 고려한 지출요소 주거비, 사교육비 반영
- 최소주거기준(36㎡)의 실거래가 평균값 650,000원('14년 말 기준, 출처 : 서울연구원)
- 2014년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 335,000원(2014년, 통계청)
- 자료기준시점('15년)과 시행시점('16년), 최신 물가상승률 통계('14년)의 시차 발생
- 최근 3개년도(2012~2014) 평균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 월액 산정 = 시간급 × 전일 근로 209시간

III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및 적용대상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 수당 (초과, 야간, 휴일근무수당 제외)

- 기본급과 더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교통비, 식대,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은 생활임금 항목에 포함
- 단,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무한 대가인 시간외수당(초과,야간,휴일)은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광진구 및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

※ 직접채용근로자 : 광진구청장(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2016년 생활임금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뉴딜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종사 근로자
-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해당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한 임금기준 적용)
- 단시간 근로자 및 1개월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시간(40시간) 미만
-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상용직(공무직, 환경미화원 등)

IV 생활임금 적용방법

근로자의 기본급과 수당(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은 제외)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기준 비교·적용

- 주40시간(월209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 : 월액 기준 비교 적용
 - 생활임금 기준 월액 1,504,800원(㉔)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㉕:기본급+수당)가 낮은 근무자를 대상
 - 두 월액 간 차액(㉔-㉕)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통상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예시]

» 월급제 주40시간(일 8시간, 주5일, 월209시간)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단위 : 원)

구 분	기존 지급액	광진구 생활임금 임금항목	
		대상여부	금액
기본급	1,013,040	○	1,013,040
주휴수당(연차포함)	241,200	○	241,200
교통비	-	○	-
식 대	-	○	-
비정기수당[1/n(근무개월수)]	-	○	-
시간외수당(초과,휴일,야간)	244,000	×	-
계	1,498,240	계	1,254,240

㉔ 생활임금 기준월액	1,504,800
㉕ 해당근로자 생활임금기준월액	1,254,240
㉔-㉕ 월 생활임금 보전금액(㉔-㉕)	250,560

- 생활임금 기준월액(㉔1,504,800원)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임금월액(㉕1,254,240원)의 차액(㉔250,560원)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
- 생활임금 포함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외수당(초과,야간,휴일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계속하여 지급

V 생활임금 운영 관련 사항

2016년 사업부서(기관) 자체 예산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급

□ 사업부서(기관)별 적용대상자 선정

- 사업부서(기관)에서는 2016년 생활임금 수준, 적용방법, 적용대상 등을 토대로 2016년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인건비 편성 예정인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자로 선정

□ 2016년 예산에 생활임금 반영

- 생활임금 대상자의 미달되는 임금수준(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임금 보전

□ 근로계약서 작성시 생활임금 지급내용 추가 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예시) ‘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은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특약 추가

VI 생활임금 적용 Q&A

■ Q①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월 다른 경우는?

- » 2016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통상근로자만 포함됨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1개월 미만 채용 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임.
월 209시간 통상근로자(전일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전금액은 월별 공휴일의 차이를 적용하지 않음.
- » 한편, 근로자가 월 중 채용되었을 경우(예: 1월 15일)
첫 달 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처럼,
생활임금 보전수당 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 Q② 교통비, 식비 등을 현물(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현물(식권 등)로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대가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현물’로 지급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함.
- » 현물(식권)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대가는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음

■ Q③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 » 2016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시간외수당(초과, 야간, 휴일수당)만 임금항목에서 제외되며,
그 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생활임금 임금 항목에 포함됨.
- » 특정월에 지급되는 비정기 임금(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상여금 등)의 경우
연간 지급되는 총액을 1/N(근로자 근무개월수)하여 기준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구 및 구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
3.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에 소속된 공무원 및 구의원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의 지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안)

2016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62호, 2015. 7.10 공포)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광진구청장

1. 명 칭 : 2016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배경

광진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적용기간 : 2016. 1. 1 ~ 2016.12.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간급 7,200원/월 1,504,800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과 수당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은 제외)
- 적용대상 : 광진구 및 구 투자·출연기관에 직접채용근로자
※ 2016년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근로자
- 국·시비 보조사업 일자리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주40시간 미만 근로자) 및 1개월 미만 근로자
-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상용직 근로자

5. 기타

2016년 광진구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450-7056)로 연락바랍니다.